#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호 2192 발의연월일: 2021년 3월 5일

발 의 자 : 방미숙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○ 고령과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목적으로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나.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#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3월 5일 ~ 3월 10일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5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#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령과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건강보험"이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을 말한다.
  - 2. "장기요양보험"이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.
  - 3. "노인개별가구(이하 "노인가구"라 한다) "란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의 자로서만 구성된 2촌이내 혈족가구를 말한다.
- 제3조(지원대상)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"건강보험료 등"이라한다)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하남시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.
- 제4조(보험료 지원) ①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매월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부터 제3조 관련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.
  - ②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,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  - ③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.

- 제5조(사실조사)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, 자산상황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**제6조(지원중단)** 시장은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  - 1.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
  - 2.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
- 제7조(환수조치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